

## 제출서류 목록

서류명	
필수서류	(서식1)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	(서식4) 소득·재산 신고서
	(서식13) 서약서
	임대차계약서 *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
	월세이체 증빙서류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 * 계좌이체 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
	통장사본
	청년 및 부·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*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

제출대상		서류명
‣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		(서식2) 위임장
‣ 청년본인계좌 지급이 불가한 경우		(서식3) 대리수령신청서
‣ 청년이 혼인한 경우		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‣ 청년이 이혼한 경우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‣ 청년이 사실혼·사실이혼한 경우		사실혼·사실이혼 증명서 * 사실혼·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
‣ 부모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		
-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		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
- 부모님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		관련 증빙서류
‣ 채무자		부채 증빙서류 *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
‣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		입실확인서, (임대)사업자등록증
‣ 전대차 계약자		전대차계약서 *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·현황도 함께 제출
‣ 외국인 (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)		임신증빙서류 * 임신사실확인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
‣ 난민		난민인정증명서

## 서식1

##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
##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(변경)서

(2쪽 중 1쪽)

처리기간

별도안내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세대주와의 관계		전화번호	
	주소						휴대전화	
	(청년)주거급여 수급여부	(○, ×)	보장기관 (시·군·구)					
	지자체 월세지원 기 수혜여부	(○, ×)	해당 지자체					

청 년 가 족 구 성 1) 원 가 구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세대주와 동거여부 (미동거사유)	학력· 재학여부	직업
	배우자 관계 <sup>2)</sup> ([ ]법률혼 [ ]사실혼 [ ]사실상 이혼)					

거주 조건 등	주택 유형		임차보증금	월세	임차면적	비고 <sup>3)</sup>
	주택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다가구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겸용 단독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중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립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세대주택	원	원	m <sup>2</sup>	
	준주택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피스텔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시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숙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노인복지주택	임대차기간	. . . ~ . . .		
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쪽방 <input type="checkbox"/> 여관·여인숙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계약일자	. . .	전대차 여부	(○, ×)	

지급 계좌	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비고(사유) <sup>4)</sup>

통지방법 [ ] 서면 [ ] 전자우편(E-mail) [ ]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[ ] 기타 ( )

## 작성방법

1) 청년가구: 청년, 배우자,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
원가구: 청년가구,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
2) 해당자에 한함

3)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

4) 청년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가 확인하는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,  
디딤씨앗계좌(CDA)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

5) 거주지·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, 신청인·거주조건·지급계좌란만 작성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<b>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</b>	<b>확인</b> 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체크)
<p><b>1.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</b></p> <p>※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/p> <p><b>□ 개인정보 활용 목적</b></p> <p>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(시 · 군 · 구청장)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</p> <p><b>□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</b></p> <p>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 · 재산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(주거급여)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, 국세(사업자등록정보, 임차보증금 포함) · 지방세, 토지 · 건물 · 건강보험 · 국민연금 · 고용보험 · 산업재해보상보험 · 출입국 · 병무 · 보훈급여 ·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<b>조회 및 적용</b>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</p> <p><b>□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</b></p> <p>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<b>5년간 보유</b>(보조금의 중복·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<b>파기함을 고지합니다.</b></p>	

<b>유의사항</b>	<b>확인</b> 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체크)
<p>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</p> <p>3.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(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)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,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4.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,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여부를 결정하며, 월세지원금 지급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.</p> <p>5. 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 <p>6.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/p>	

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**

구비서류	1.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
	○ 청년이 미혼인 경우: 청년본인 및 부 · 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	○ 청년이 기혼인 경우: 청년, 배우자, 청년의 부 · 모 및 배우자의 부 · 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	2. 소득 · 재산신고서
	3.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4.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)
	5. 건축물대장 · 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(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)
	6.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**서식2****위임장****위    임    장**

위임하는 사람	이름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위임받는 사람	이름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전화번호
	주소	

민원내용	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[      ]	이의신청 [      ]	확인서 발급 [      ]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**위임하는 사람**

(서명 또는 인)

**유의사항**

-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### 서식3

##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
###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
성명		생년월일	성별
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
주소			
수급자 (신청인)	신청	[ ]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	
	사유	[ ]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[ ] 수급자가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	
수령기간		년 월부터	년 월까지 ( 개월간)

\* 아래 후견인란은 「민법」에 따른 후견인만 작성합니다.

후견인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주소	
대리 수령인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주소	
	수급자와의 관계	
지급계좌 금융회사( ) 계좌번호( )		

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#### 첨부서류

-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: 피성년후견인인 사실,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,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
-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#### 유의사항

-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·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## 서식4

## 소득 · 재산 신고서

### 소득 · 재산 신고서 [□신규 □변경]

\* 아래 소득, 재산,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가구원 성명 <sup>1)</sup>					
신청인과의 관계					
소 득 사 항	근로 소득	상시근로	원	원	원
	사업 소득	기타(자영업)	원	원	원
	재산 소득	임대소득	원	원	원
	기타 소득	이자소득	원	원	원
재 산 사 항	건축물 (주택, 건물, 시설물)	원	원	원	원
	선박	원	원	원	원
	토지	원	원	원	원
	항공기	원	원	원	원
	자동차	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명( )			
	임차보증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전 · 월세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 · 월세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 · 월세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 · 월세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원)
	분양권	원	원	원	원
	조합원 입주권	원	원	원	원
	회원권	원	원	원	원
	부 채3)	금융기관 대출금	원	원	원
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		원	원	원	원

위와 같이 소득 ·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 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- 1) 제1호서식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에서 작성한 가구원(월가구 · 청년가구)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
- 2) 공적이전소득 :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· 연금 · 급여 · 기타 금품(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 등)
- 3) 부채의 용도가 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대출인 경우만 작성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## 서식5

##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

[1 면]

### 청년월세지원 [ ] 결정(적합) [ ] 결정(대상제외) 통지서 [ ] 변경·중지·상실

신청인/ 세대주	성명		생년월일		전화번호	
	주소				휴대전화	
					전자우편	
비고						

- 귀하가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인과의 관계	지원대상자	생년월일	지원금액	지원개시일
	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			

\* 청년월세 지원 결정사항은 시·군·구청장이 통지

- 거주지역, 세대구성, 소득·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)에 신고하여야 하며,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, 변경 되거나 지원금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.
  - 중지 :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,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증인 경우,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,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가 확인한 경우,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, 지원대상자가 사망·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, 거주지·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
  - 변경 : 전출입 등으로 임대차 계약조건이 변경 있는 경우 등
-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,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·우체국·신협·새마을금고·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 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, 개설 후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)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

## [ ] 대상제외

신청내용			
대상제외 사유	[ ] 월세계약 종료 [ ] 기타( )	[ ] 자격심의결과 지원 자격 미인정	
안내	<p>1.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.</p> <p>2. 이후 월세계약 체결 등 개인여건 변동으로 청년월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는 청년월세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		

## [ ] 변경·중지·상실

[ ] 변경	일자	년 월 일	부터	내용	
	사유	[ ] 청년 본인의 전·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[ ] 계약내용 변경 [ ] 기타( )			
[ ] 중지	일자	년 월 일	부터	내용	
	사유	<p>[ ]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[ ]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[ ]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(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) [ ]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 [ ] 보호대상자의 지원 중지 요청 [ ]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[ ]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,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[ ] 지급받은 월세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[ ] 기타( )</p>			
[ ] 상실	일자	년 월 일	부터	내용	
	사유	<p>[ ] 사망 [ ] 국적상실 [ ] 국외이주 [ ] 소득·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[ ]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[ ] 기타( )</p>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비 고

※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

1. 청년월세 지원 신청(변경)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, 상담 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2.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- 1) **청년월세 지원** : 지원결정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**30일 이내** 해당 보조 사업자(시·군·구)에게,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**30일 이내**에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를 거쳐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)에게 서면으로 신청
  - 2)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**30일 이내**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3.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(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**서면 또는 온라인 (www.simpang.go.kr)으로**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지원기간 중 월세계약 내용 변동,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담당자 : 소속부서

성명

문의 전화번호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**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종질지(80g/m<sup>2</sup>)]

## 서식6

## 이의신청서

### 이의신청서

처리기간		별도안내	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대리 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신청인과의 관계
	주소	(전화번호 : )		
처분 내용	[ ] 선정 [ ] 지원변경/중지/정지/상실 [ ] 환수 [ ] 기타			
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	년 월 일			
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	년 월 일			
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				
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				

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**

구비서류	1.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#### 안내사항

-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, 시·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.
- 시·도지사,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군·구청장, 시·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)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-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## 서식7

## 처분사전통지서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

### 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목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		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							
	주 소			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		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	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		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부서명	담당자					
		주소		전화번호					
		전자우편 주소		팩스번호					
	제출기한		년 월 일까지						

#### <의견제출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- 귀하게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  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\*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·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끝.

발신명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 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 
우 주소  
전화번호( ) 팩스번호( )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/ 홈페이지 주소  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  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**서식8****의견제출서 (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서식)****의 견 제 출 서**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 내용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 : )
	의 견	
기 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**유 의 사 항**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**서식9****이의신청 결정 통지서****이의신청 결정 통지서**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✓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 :	접수일 :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성명 :	생년월일 :	
	전화번호(자택) :	휴대전화번호 :	
	주소 :		
이의 신청일			
처분 내용			
이의신청 내용			
이의신청 결정 결과	[ ] 처분 취소·변경	[ ] 기각	[ ] 각하
이의신청 결정 사유	<별지 작성 가능>		

-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,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,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-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·군·구청장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과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담당자 : 소속부서

성명

문의 전화번호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**

직인

참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각 :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,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(인정)하지 않는 상태</li> <li>• 각하 :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</li> </ul>
--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**서식10****환수통지서****청년월세 지원금 환수(반환명령) 통지서 ( 차)**

청년월세 지원 대상자	성    명		전화번호
	생    년    월    일		
	주    소		
지원내용			
환수(반환) 사    유			
환수결정액	원	납부장소	
기    납부액	원		
납부액	원		
납부기한	년    월    일까지	산출내역	별첨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,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서식11

##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

##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수급자	성명		생년월일
	주소(소재지)		
	세대주 성명		세대주와의 관계
제출용도	용도		
	제출처		

「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」 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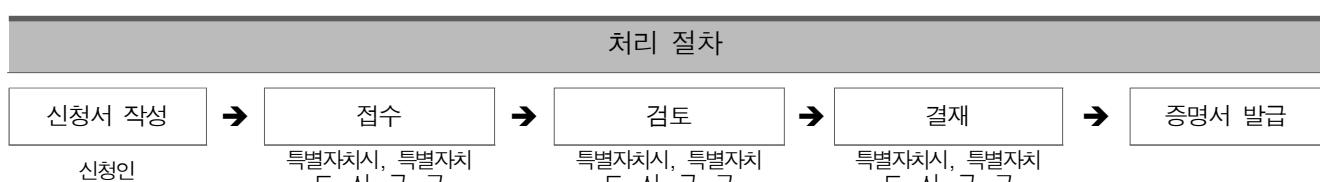
###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급자와의 관계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

■ 210mm × 297mm [ 배사지 80g/m<sup>2</sup> ]

**서식12****대상자 확인서****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서**

청년월세 지원 대상자	성명		전화번호		
	생년월일				
	주소				
지원내용	지원금액	월	원		
	지원기간	년	월	~	년
제출용도	용도				
	제출처				

위 사람은 「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」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## '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' 지원 서약서

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과 관련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< 유의사항 >

-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(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)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, 부모와 합가, 주택 소유,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,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2. . .

성명

(서명)

**서식14****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 신청서****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 신청서**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▼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성명		생 년 월 일 (외국인등록번호)	
주소			
수급자 신청사유	[ ] 부모와 합가		
	[ ] 청년가구 구성원중 1인이 주택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소유 [ ]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 거주 [ ] 이사 등으로 전세주택·공공임대주택 등 제외대상 주택 거주 [ ] 기타( )		

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급자와의 관계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

**※ 유의사항**

1. 중지사유 해소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잔여 기간동안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.